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0. 25. 장철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4. 17.)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장철민의원)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 백년소상공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용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백년소상공인의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 운영상의 개선·보완할 부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장철민의원·오세희의원·김동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